「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O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10월 01일, 평창군수 제출

○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10일 회부

O 상정일자: 제24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
(2019년 10월 10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환경위생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관련 사업 및 관광용 가축사육이 필 요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가축 및 축사 의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줄이고 주민의 생 활환경을 보호 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관광지 등에서 관람용 등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가축사육이 가능하도록 가축사육 제한 예외규정 추가 (안 제3조제3항제2호)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반려동물 및 가축관련 기업 유치를 하는 경우 가축사육이 가능하도록 가축 사육 제한 예외규정 추가.(안 제3조제3항제8호)

O 가축 및 축사의 관리 규정 중 톱밥깔짚 우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관리 규정이 없어 톱밥깔짚 우사 관리기준 추가 (안 제5조제6호)

#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:최순철)

O 가축의 사육제한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.

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로 위임된 가축의 사육제한 예외규정에 "관광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" 및 "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반려동물 및 가축관련 기업유치를 하는 경우"를 추가 하여

○ 변화하고 있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함은 물론 지역개발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측면과 보존측면을 비교 형량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

조례개정에 따른 상위법에 특별한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관 련 법 령

#### 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】

- 제8조(가축사육의 제한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 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<u>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</u> 일정한 구역을 지정·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·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.
  - 1.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
  - 2. 「수도법」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,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 역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
  - 3. 「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, 「영산강・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・고시된 수변구역
  - 4.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
  - 5.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 ·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
  -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・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 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(危害)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・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  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·고시한 구역(이하 "가축사육제한구역"이라 한다)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,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
  - ④ 시장·군구·구성장은 제3항에 따라 국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, 부지 알선 등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  - ⑤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·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와 혐의하여야 한다.